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통 일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통일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통일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2. 2. ~ 12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]

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(제38조제4항 및 제5항 관련)

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(존속기한: 2022년 12월 31일)

총계	7
일반직 계	7
고위공무원단	1
4급 이하	6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및 정원) ① 통일부에 <u>2021년</u> <u>12월 31일까지</u> 존속하는 한시조 직으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 단을 둔다. ② ~ ⑦ (생 략)	제38조(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및 정원) ① ----- <u>2022년</u> <u>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.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70